

## 서울특별시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50호)

‘96. 5. 20

총무재무위원회  
위 원 장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6. 4. 3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6. 4. 15
- 다. 상정일자 : '96. 5. 20
- 라. 위원회 개최 회수 : 제53회 임시회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 상정,  
수정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박우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의 수혜혜택이 년 2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, 현실에 맞게 수업료 년 4회 납부)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이 자녀의 학비로 인한 애로사항을 없애고, 통장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보다나은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제2항 삭제  
(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·고등학생은 각각 50%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)
- 동조례 제8조 (장학금의 지급시기) 변경  
(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→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)

다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없음
- 합의 : 없음
- 기타 : 없음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임 총 빈)

가. 검토내용

-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시기가 년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와 맞게 분기별 (4회)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임.

나. 검토결과

- 중고등학생을 각각 안배하고, 학교간 평준화를 고려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와 같게 함을 타당하다고 봄.
- 부칙에서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"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"로 정정함이 타당함.

다. 참고자료

'96 예산 현황

- 통장자녀 학비보조 51,747천원

중학교 :  $125,100\text{원} \times 748\text{명} \times 10\% \times 4\text{회} \times 1/2 = 18,715$

고등학교 :  $220,800\text{원} \times 748\text{명} \times 10\% \times 4\text{회} \times 1/2 = 33,032$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연2회를 연4회로 실시함은 수혜자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, 1인이 계속 받을 수 있는가? → 748명의 10%씩 4회로 중복이 안되고 있음.
- 제5조 2항을 삭제하는 이유? → 지급대상이 93년도 171명, 94년도 129명(중 54, 고 75), 95년도 144명(중 47, 고 97)으로 50%씩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임.
- 예산편성시 중학생과 고등학교 안배는 되고 있다고 보는가? → 가급적 안배시키고 있음.
- 경제적 사정으로 ----- (제1조)-----에서? → 통장중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선정시 어려움이 없음.
- 서초구의 통장중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일 아닌가? →
- 조례에는 10%로 되어 있고 편성지침에는 15%로 되어 있으나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 1인이 계속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→ 그렇지 않음.
- 조례상 50%씩 군배하도록 되어있는데 비율이 안맞는 이유? →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선정하고 있음.
- 학기초에 지급하였는지, 학기말에 지급하였는지? → 학기말에 지급함.
- 통장이 장기근무하므로 60세이상이 많아 자녀중 중, 고교생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→ 타용도로 사용안되고 있음.
-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. 748명으로 볼 때 2년임기, 1회연임으로 1년에 178명이 교체되어야 하는데? →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음.
- 연2회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4회로 함은 사기진작측면에서 바람직 하며 예산편성지침상 15%로 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은 10%로 함은 수혜폭이 적은 것 아닌가? →

- 중고등학생의 안배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는 →현실성이 적어서 삭제하는 것임.
- 중고등학생의 50%씩 균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장학금이 적다는것 아닌가 →통장의 고령화로 부족은 없었음.
- 통반설치 조례의 개정 용의는 →각동에 동향을 파악, 대책을 수립 하겠음,

#### 5. 토론자 및 토론판

가. 찬성 : 없음

나. 반대 : 수정동의안 발의

"제5조(선발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, 고등학생을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"는 삭제는 부당하므로 현행대로 두자는 수정동의안 발의  
— 재청 — 가결 (만장일치)

#### 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6. 5. 20 총무재무위원장

나. 수정이유 :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반반씩 안배하고 학교간도 골고루 고려함으로써 수혜폭을 넓히고 장학금 지급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임.

## 다. 수정 주요골자

개정안	수정안	비고
제5조 (선발) ② 삭제	제5조 (선발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·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,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	현행조례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--로--(삭제)

## 7. 심사결과

수정가결 (만장일치)

##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- 가. 예산 조치
- 나. 연설회의, 공청회등

## 10. 체계자구 정리내용 : 수정안에 반영